

Association records

협회 기록물

사단법인

협회의 기록물은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기록물은 회원들의 집적된 지식을 나타내며 협회가 취한 조치 및 협회가 내린 의사결정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기록물은 협회의 일상적 기능 및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어떤 기록물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가?

협회는 다음 기록물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 위원회 위원의 명부
- 위원이 공개한 이해 관계에 관한 기록
- 협회의 재무거래 및 재무상태에 관한 기록
- 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록
- 회원 명부.

또한 협회는 다음 기록물도 비치해야 합니다.

- 승인된 서명자들에 관한 기록
- 현재 공무 담당관 및 공식 주소에 관한 기록.

어떤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가?

위원회 위원의 명부.

위원 명부가, NSW에 위치해 있는 협회의 주요 건물 또는 협회의 공식 주소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무료로 명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명부에는 다음 세부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각 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거주지 주소
- 각 위원의 취임일 및 퇴임일
- 회장, 부회장, 서기, 경리부장의 지위 (지위가 있는 경우)를 맡은 위원의 성명
- 위원들이 그러한 지위에 임명되었거나 선출된 날짜 및 퇴임한 날짜.

위원 명부는 위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긴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갱신되어야 합니다.

이해 관계의 공개에 대한 기록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서 고려하고 있거나 고려할 예정이며, 위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에 대한 해당 위원의 공개 사항을 반드시 기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공개 사항을 반드시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2009* (협회 법인설립 법 2009) (이하 '법률') 제 31항에 따라 취급해야 합니다.

기록된 공개 사항들은 반드시 위원 명부와 함께 비치되어야 하며 협회 회원이면 누구든 위원회에서 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조사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금은 *Associations Incorporation Regulation 2016* (협회 법인설립 규정 2016) (이하 '규정')에 의거하여 최대 허용 요금 \$5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재무 기록물

협회는 재무거래 및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기록물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협회가 신탁 재산에 대해 신탁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 신탁 재산의 재무거래 및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기록물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제 1계열 협회가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재무 기록물을 충분히 확보하여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호주 회계 표준)과 일치하는 재무제표가 준비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협회는 최소한 다음 기록물을 비치해야 합니다.

- 영수증철
- 지급 기록 - 보조 서류 및 승인서 첨부
- 인보이스
- 은행 명세서
- 은행입금철 (사용되는 경우)
- 수표책.

또한 협회가 자산 명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주요 자산에 대한 관리를 이어가는데 중요합니다.

재무 기록물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비치되는 경우, 반드시 영어본도 원본과 함께 비치되어야 합니다.

협회를 대표하여 위원회는 지급이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한 적절한 내부 재무 관리가 이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지급을 감독하고 인가/승인해야 합니다. 이 일이 최소한 위원회 회의 때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 의사록

협회는 모든 위원회 회의 및 총회의 의사록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회의 진행에 대한 명확하고, 간략하며, 정확한 요약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의 참석자 현황, 회의에 제출된 문서 및 통과되거나 기각된 결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의사록의 일부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원본 의사록과 함께 영어로 된 의사록도 반드시 비치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서명자

협회의 승인된 서명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비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을 위원 명부와 함께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협회의 공무 담당관은 협회의 승인된 서명자입니다.

기록되는 세부사항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승인된 서명자의 성명
- 지위 (예: 공무 담당관, 위원)
- 임명일 및 퇴임일
- 퇴임 사유 (예: 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퇴임, 사임, 총회에 의해 공무 담당관의 지위에서 해임)
- 중요한 임명이나 철회의 과정을 기록한 의사록의 참조 사항.

협회의 기록물 유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협회가 필수 기록물을 비치하고 유지하는 일은 위원회의 책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협회의 정관에 협회의 기록물을 비치하고 유지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 책임이 명시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협회에 속한 모든 문서들을 퇴임 후 14일 이내에 공무 담당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공무 담당관의 책임입니다:

- 전임자였던 위원들에게서 모든 협회 문서를 수거하여 신임 위원들에게 전달
- 퇴임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모든 협회 문서를 위원에게 반환.

누가 협회의 기록물을 조사할 수 있는가?

위원 명부는 누구라도 무료로 조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해 관계에 대한 공개 기록을 반드시 위원 명부와 함께 비치하여 회원 중 누구라도 위원회가 정한 \$5 이하의 요금을 내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협회 문서에 대한 조사는 협회의 정관에 따라 관리됩니다.

재무 기록물 및 회의 의사록을 어떻게 비치해야 하는가?

기록물 및 의사록을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비치해야 합니다. 기록물과 의사록이 전자문서 형태로 비치되는 경우, 그것들이 반드시 출력된 자료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기록물 조사 자격이 부여된 경우, 기록물의 출력된 자료 역시 적절한 시간 내에 반드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회의 기록물을 얼마 동안 비치해야 하는가?

재무 기록물은 기록된 지 최소 5년간 비치되어야 합니다.

협회가 기록물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예:

- 협회에 적용될 수도 있는 기타 법률 요건. 예를 들어, 직원을 두고 있는 협회의 경우 7년 동안 시간 및 임금 기록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 또한 직원을 두고 있는 협회는 근무, 보건 및 안전 법률이나 퇴직연금 법률과 관련된 법정 기록 유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송 가능성과 연계될 수 있는 문서들을 폐기하면 안됩니다.
- 자본이득세에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문서들을 폐기하면 안됩니다.

또한 일부 문서의 경우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예:

- 회의 의사록은 회의에서 처리된 사무에 대한 공식 기록이며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 가령 부동산 권리증서 또는 지적 재산과 관련된 증거와 같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문서들은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협회가 특정 기록물을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Association records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본 안내자료의 주제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Fair Trading 웹사이트 www.fairtrading.nsw.gov.au를 방문하십시오.

Registry Services (등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PO Box 22

Bathurst NSW 2795

전화: 02 6333 1400

무료 전화: 1800 502 042

이메일: registryinquiries@finance.nsw.gov.au

www.fairtrading.nsw.gov.au
Fair Trading enquiries 13 32 20
TTY 1300 723 404
언어 지원 13 14 50

이 자료는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토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적절한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 State of New South Wales (NSW Fair Trading), 2017

NSW Fair Trading을 통해 집행하는 The State of New South Wales는 공적으로 재정을 보조하는 정보의 재사용을 지원 및 권장합니다. 이 발행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licence 하에 인가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fairtrading.nsw.gov.au/ftw/Copyright.page를 방문하십시오.